

변경 대비 표

1. 변경 대상 펀드 :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제1호(주식)

2. 효력발생 예정일: 2015년 7월 29일 (수)

3. 변경 내용

-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 (FATCA반영)
-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변경
- 투자전략 내용보완
- 세법개정내용 반영 및 결산에 따른 갱신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FATCA반영	(신설)	10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-집합투자규약 변경(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) -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(투자전략 내용보완, 규약변경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)
5.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		-	최근일자 업데이트(2015.7.23)
8. 집합투자기 구 투자대상		②채권 : (생략)~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②채권 : (생략)~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<u>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전자단기사채등(신용평가등급이 A3-이상인 것)</u> 환매조건부매수
		(신설)	
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p>	<p>투자전략 내용보완</p>	<p>(1) 동부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역량 집중 - 섹터 애널리스트에 의한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으로 유망종목 발굴에 주력 -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적 발굴</p> <p>(2) 가치주 장기투자 전략 - PBR&ROE를 기준으로 선정된 가치주에 대해 주식투자비중의 60% 이상 유지 -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 장기보유</p> <p>(3) 포트폴리오 구성 - 균등분할투자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. 단, 시가총액, 저평가 정도 등을 감안해 편입비 조정 가능 - 중소형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 30% 이상 유지 -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▪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시 분할 매도 ▪ 회사의 고유경쟁력,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시 즉각 교체</p> <p>(4) 위험관리 -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할 예정 - 특정 섹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자체로 섹터간 위험관리 진행.</p>	<p>(1) 가치주에 장기 투자 - 철저한 기업분석 및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치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 투자 ▪ 섹터 애널리스트별로 담당섹터에 대해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 ▪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 발굴 *가치주: 낮은 PBR, 낮은 PER,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등</p> <p>(2) 포트폴리오 구성 및 조정 - 가치주 중심으로 시가총액, 저평가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▪ 거래소 중소형주 및 코스닥종목 투자비중은 주식투자비중의 30% 이상 유지 - 시장상황 및 개별종목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 ▪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 시 분할 매도 ▪ 회사의 고유경쟁력,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 시 종목 교체 * 중소형주 ① 편입일 전일 증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② 다만,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에 해당하였으나 편입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목은 중소형주로 분류</p> <p>(3) 위험관리 - 섹터별, 종목별 투자한도관리를 통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위험 축소 - 적극적인 자산배분 지양과 가치주와 장기성장주가 혼합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주식시장과의 괴리도 축소 및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</p>	<p>결산에 따른 갱신</p>	<p>-</p>	<p>보수 및 비용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(2015.7.20)</p>

의 투자기간별 예시>			
14. 이익배분 및과세에관한 사항 나. 과세	세법 개정 에 따른 과세 항목 및 과세 율 등 변경 등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 는 15.4% (소득세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 다. (이하 생략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 세이익은 14% 의 세율로 원천징 수(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) 됩니다(이하 생략)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 는 15.4% (소득세14%, 지방소득 세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 니다. (이하 생략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 세이익은 15.4%(법인세 14%, 지 방소득세 1.4%) 의 세율로 원천 징수(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 외)됩니다(이하 생략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결산에 따른		재무제표, 설정 및 환매현황, 운용 실적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 (2015.7.20)
2. 연도별 설 정 및 환매현 황	갱신		
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			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	회계연도 업데이트 (기준일: 2014.12.31) 최근일자 업데이트(기준일 : 2015.7.23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자본시장법 개정	(신설)	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 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 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 우는 제외합니다.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개정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
		5.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	6.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